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슝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8. 6. 22.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492

## I. 결산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8. 5. 31.

○ 회 부 일 : 2018. 6. 11.

## Ⅱ. 결산현황

## 1. 총괄

-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2,43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97만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52억 19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5억 7,03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2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7,879만원임.

## 2. 세입 결산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431만원 보다 4,066만원이 증액된 6,49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됐음.
- 주요 세입 현황은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487만원으로, 사용료수입(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수수료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사업수입(서울의회보 민간광고수입료) 등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010만원으로, 위약금(연구용역 및 청사 유지보수공사 지체상금), 불용품매각대금(공용차량 매각대금), 그 외 수입(소송비용 등)임.

### 3. 세출 결산

- 2017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251억 8,446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747만원이 증액돼 예산현액은 252억 194만원임.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89.6%인 225억 7,034만원이 지출됐고, 2억 5,2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23억 7,879만원(9.4%)은 잔액으로 남았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24억 5,377만원 중 118억 6,481만원을 지출했음.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86억 1,050만원 중 72억 5,296만원을 지출했음.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8억 308만원 중 22억 1,125만원을 집행했음.

##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액 지급에 사용됨(1건, 390만원).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 변경 : 시의회소식지 발행 규모 확대 등에 따른 부족분에 사용됨(1건, 2,000만원).

마.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280만원

5. 기금결산 : 해당 없음

6. 채권현재액: 해당 없음

##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1,005억 9,800만원으로,
  - 토지(3,638㎡, 954억 7,000만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85억 8,900만원 증가했음.
  - 건물(14,858m², 42억 3,600만원)은 전년대비 대장가액 증가가 없음.
  - 그 밖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지적재산권(7억 6.100만원)의 증감분은 없음.

#### <표 1> 2017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    | l I         | 2016년도말 | 당해연도  | 증감액 | 2017년도말 |
|----|-------------|---------|-------|-----|---------|
|    | 구 분         | 보유현황    | 증가    | 감소  | 보유현황    |
| 합  | 계           | 91,879  | 8,720 |     | 100,598 |
|    | 계           | 91,879  | 8,720 | -   | 100,598 |
|    | 공공용재산       | -       | -     | -   | _       |
| 행  | 공용재산        | 91,879  | 8,720 | -   | 100,598 |
| 정  | 토지(3,638㎡)  | 86,881  | 8,589 | _   | 95,470  |
| 재  | 건물(14,858㎡) | 4,236   | -     | -   | 4,236   |
| 산  | 기타          | 761     | -     | -   | 761     |
|    | 기업용재산       | -       | -     | -   | -       |
|    | 보존재산        | -       | -     | -   | _       |
| 일빈 | ·대산         | -       | -     | -   | _       |

## 8. 물품 증가 및 현재액

○ 2017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756개이며, 전년 대비 4억 2,400만원이 증가해 현재 가액은 35억 6,100만원임.

## <표 2>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 2016년도말 |       | L0  | y해연도 증가의 | H   | 2017년도말 |
|----|---------|-------|-----|----------|-----|---------|
| 十正 |         | 보유현황  | 구매  | 관리전환     | 소계  | 보유현황    |
| 일반 | 수량      | 743   | 13  | _        | 13  | 756     |
| 회계 | 금액      | 3,137 | 424 | _        | 424 | 3,561   |

##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1 세입 결산 검토

### 1) 총괄 검토

-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431만원으로, 4,066만원이 증액된 6.497만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했음(수납률 100%).
  -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총 2,487만원으로, 「서울의회보」민간광고수입 1,588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744만원) 및 기타 사용료(156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010만원으로, 공용차량 매각대금(2,560만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931만원), 연구용역 및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체상금 (222만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잔액 발생(238만원), 현금인출기 설치 운영에 따른 화재보험 및 전기요금 징수(24만원), 공용차량 낙찰자 인수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34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임.

#### <표 3>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만원, %)

| 예산과목<br>(장/관/항/목)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율 |
|-------------------|-------|-------|-------|------|-----|
| 합 계               | 2,431 | 6,497 | 6,497 | _    | 100 |
| 세외수입              | 2,431 | 6,497 | 6,497 | _    | 100 |
| 경상적 세외수입          | 2,431 | 2,487 | 2,487 | _    | 100 |
| 재산임대수입            | 120   | _     | _     | _    | _   |
| 공유재산임대료           | 120   | _     | _     | _    | _   |
| 사용료수입             | _     | 156   | 156   | _    | 100 |
| 기타사용료             | _     | 156   | 156   | _    | 100 |
| 수수료수입             | 800   | 744   | 744   | _    | 100 |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800   | 744   | 744   | _    | 100 |
| 사업수입              | 1,510 | 1,588 | 1,588 | _    | 100 |
| 기타사업수입            | 1,510 | 1,588 | 1,588 |      | 100 |

| 예산과목<br>(장/관/항/목)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수납율 |
|-------------------|-------|-------|-------|------|-----|
| 합 계               | 2,431 | 6,497 | 6,497 | _    | 100 |
| 세외수입              | 2,431 | 6,497 | 6,497 | _    | 100 |
| 임시적 세외수입          | -     | 4,010 | 4,010 | _    | 100 |
| 과징금 및 과태료등        | _     | 222   | 222   | _    | 100 |
| 위약금               | _     | 222   | 222   | _    | 100 |
| 기타수입              | _     | 3,788 | 3,788 | _    | 100 |
| 불용품매각대            | -     | 2,560 | 2,560 | _    | 100 |
| 그외수입              | -     | 1,228 | 1,228 | -    | 100 |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수납액 비율이 평균 97.3%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세입징수실적을 보이나, 여전히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과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표 4>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만원, %)

|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br>(A) | 수납액<br>(B) | 미수납액 | 결손처분 | 다음연도<br>이월액 | 수납율<br>(B/A) |
|------|-------|--------------|------------|------|------|-------------|--------------|
| 2017 | 2,431 | 6,497        | 6,497      | 0    | 0    | 0           | 100          |
| 2016 | 2,489 | 2,793        | 2,793      | 0    | 0    | 0           | 100          |
| 2015 | 2,705 | 3,431        | 3, 154     | 277  | 0    | 277         | 91.9         |

## 2) 임시적 세외수입

- 당초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용차량 매각대금(2.560만원)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임.
- 이 수입은 2017년도 예산에 공용차량 교체 및 매각 처분이 명확히 예정돼있어서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3)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사용료'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발생은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료수입<sup>1)</sup> 세입목의 착오 입력에 따른 것으로, 동일 유형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 2 세출 결산 검토

## 1) 총괄 검토

-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더해져 당초 예산액 보다 1,747만원 증액된 252억 194만원으로, 이 중 225억 7,034만원이 지출됐고, 2억 5,28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23억 7,879만원이 불용 처리됐음.
-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 추이는 아래의 <표 5>와 같으며, 2017년도 불용률은 전년 대비 4.5% 포인트 증가(4.9% → 9.4%)했음.
- 서울시(일반회계) 평균 불용률<sup>2)</sup>과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처의 불용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sup>1)</sup> 의회사무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우리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시용하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sup>2)</sup> 출처 : 2015, 2016,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 <표 5>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

(단위: 만원, %)

| 구 분  | 예산액       | 전년도<br>이월액 | 이용 · 전용 |       | 예산현액      | 이월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서울시   |
|------|-----------|------------|---------|-------|-----------|--------|-------------|------------------|-------|
| 十 正  |           |            | 감       | 증     | 에인연곡      | Mah    | 1187        | (불용률)            | 평균불용율 |
| 2017 | 2,518,446 | 1,747      | 390     | 390   | 2,520,194 | 25,280 | 2,257,034   | 237,879<br>(9.4) | 2.3   |
| 2016 | 2,233,549 | _          | 2,902   | 2,902 | 2,233,549 | 1,747  | 2, 122, 218 | 109,584<br>(4.9) | 1.7   |
| 2015 | 1,952,523 | _          | 1,010   | 1,010 | 1,952,523 | _      | 1,886,715   | 65,808<br>(3.4)  | 2.3   |

## 2) 전용

○ 시의회사무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신분인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이 중도 사직함에 따라 신규 채용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에 대한 보수액을 지급하기 위해 390만원을 전용했음(<표 6> 참조).

#### <표 6> 2017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 세부사업       | 통계목           | 예산액 -   | 전용금액  |       | 승인일자       | 사유                                       |  |
|-----|------------|---------------|---------|-------|-------|------------|--|--|
| 구세경 | 세구시급       |               |         | 감액    | 증액    | OČEN       | /\[π                                     |  |
| 의정  | 의회운영<br>지원 | 사무관리비         | 352,570 | 3,901 | -     | 2017-07-12 |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br>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br>보수액 지급 |  |
| 담당관 | 의회운영<br>지원 | 기간제근로자등<br>보수 | -       | -     | 3,901 | 2017-07-12 |  |  |

- 이와 관련해 2016년까지는 중증장애의원이 장애로 인해 의정활동 수행에 제약을 받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왔음.
- 그런데 이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5.2.26.),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16.1.7.) 등 관련법령 개정³)으로 중증장애의원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을 말한

<sup>3) [</sup>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활동보조에 대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지원이 확대(장애 1·2급 → 장애 1~3급까지 지원) 됨에 따라, 장애 1~3등급 중증장애의원의 활동보조인력 전원을 일반임기제 8급으로 채용('16.4.18.~)하면서 2017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을 미편성했음.

○ 동 예산 전용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이 중도 사직('17.6.19.)함에 따라 신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17.9.18. 임용)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보수액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전용의 불가피함이 인정됨.

#### 3) 변경

○ 예산 변경은 2,000만원(1건)으로, 시의회소식지 발행 규모 확대(3회분, 각각 4만부
→ 4만 5,000천부) 등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으로 사용했음(<표 7> 참조).

#### <표 7> 2017회계연도 예산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 세부사업         | 통계목   | 예산액 -     | 변경금액   |        | 승인일자       | 사유                   |  |
|-----|--------------|-------|-----------|--------|--------|------------|----------------------|--|
| 구세임 | 시기구시[답       |       |           | 감액     | 증액     | 9025VI     | ЛΙΤ                  |  |
|     | 계            |       | 4,548,418 | 20,000 | 20,000 |            |                      |  |
| 의정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 사무관리비 | 3,715,806 | 20,000 | _      | 0017 11 00 | 시의회소식지 발행 규모         |  |
| 담당관 |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 사무관리비 | 832,612   | _      | 20,000 | 2017-11-23 | 확대 등에 따른 추가<br>예산 소요 |  |

다. <개정 2012.12.27, 2015.2.26>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증장애의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 2. ~ 4. 생략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 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u>「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u> <u>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 <개정 2016.1.7.> ② 생략

② ~ ③ 생략

- 원칙적으로 예산은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 편성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님.
- 이렇게 집행부의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부족 예산의 충당을 위해 2,000만원을 예산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65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김으로써, 집행상황 점검 및 소요 예산 추정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표 8 참조>).

#### <표 8> 2017년 시의회소식지 발행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 당초 예산액  | 변경금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
| 832,612 | 20,000 | 852,612 | 836, 156 | 16,456 | 1.9 |

## 4) 이월

- 사고이월은 총 3건, 2억 5,28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표 9> 참조).
  - 원스톱 1단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공고와 사업계약(12.19.)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했음.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2건은 계약업체의 과업수행 결과가 미흡해 연도 내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사고이월했음.

#### <표 9>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사업명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의정정보화지원<br>(전산개발비) |                          | 225  |     | 209 | 16   |
| 사고<br>이월           | 의정정보화지원<br>(자산 및 물품 취득비) | 300  | 258 | 21  | 21   |
|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930  | 901 | 23  | 7    |

- 사고이월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집행부 임의로 활용돼선 안 될 것임.
- 특히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발주시기 및 업체선정의 기간, 계약 당사자의 이행 평가 등을 고려해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5) 과다불용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 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됨.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과 불용사유는 <표 10>과 같으며, 낙찰차액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의회 의정소식지 발행'(5억원 전액 불용)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령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된 것 으로 사전 검토가 미흡한 대표적 사례임.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불용률 80.8%)과 '국내 의정활동 교류'(불용률 69.9%) 사업은 전년도<sup>4)</sup>에 이어 2017년에도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산불용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동일한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sup>4) 2016</sup>회계연도 불용률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36%, 국내 의정활동 교류 28%

#### <표 10> 2017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천원, %)

| 예산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잔액<br>(불용률)      | 불용사유   |
|--------------------------|-----------|--------------------|--|
| 서울시의회 의정 소식지<br>발행       | 500,000   | 500,000<br>(100.0) | 법률자문결과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br>있어 사업계획 취소                    |
| 국외 자매도시<br>의회대표단 초청      | 194,790   | 157,452<br>(80.8)  | 해당도시 정치사정 등의 사유로 방문이 지연·취소됨                              |
| 국내 의정활동 교류               | 415,540   | 289,599<br>(69.9)  | 상임위 및 세미나 등 의원여비 미실시에 따른<br>집행잔액 발생                      |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 20,000    | 10,704<br>(53.5)   | 기 제작한 홍보 브로슈어 재고수량이 있어 미제작에 따른<br>집행 잔액 발생               |
| 의회청사 시설개선                | 952,000   | 348,452<br>(36.6)  | 청사 내부공간에 그린힐링공간(벽면녹화)을<br>설치계획 하였으나 안전진단 결과<br>사업추진을 중단함 |
| 의회 입법·법률고문<br>운영         | 102,360   | 26,970<br>(26.4)   | 쟁송건수가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
| 시민과 함께하는<br>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 26,400    | 20,071<br>(24.0)   | 예산토론회 축소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
| 상임위원회 회의영상<br>중계 운영      | 1,251,368 | 288,287<br>(23.0)  |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

## 6) 주요 사업별 검토

## 가. 의정정보화 지원(서울시의회 의원 활동 ONE-STOP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의회 의원 활동 원스톱(ONE-STOP)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기존 의정포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통합정보 제공과 의원-시민-집행부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임.
-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 1단계 사업을 위해 의회사무처는 2017년 7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채 전액 사고이월했음.
  - 원스톱 네크워크 구축사업5)의 로드맵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6)이 '17년 8월에야 착수

<sup>5) &#</sup>x27;의정역랑강화파'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정보 공유시스템인 원스톡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하고, 후속 작업인 원스톱 1단계 시스템 구축 사업은 12월 13일 계약이 체결되는 등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음.

- 특히 4개월이 소요되는 동 사업의 연구용역 특성상 후속 시스템 구축비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됨.
-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수립 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나.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은 시의회를 홍보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자 의회의 주요 정책·의정이슈, 조례 입안·제정, 의원 의정활동 등의 소식을 간행물로 발행하는 사업임.
- 2017년도 사업의 예산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9%포인트 감소한 1.9%로 양호한 수준이고, 당초 목표인 24만부보다 1만 5,000부 많은 25만 5,000부를 발행해 달성률 106.3%를 기록했음(<표 11> 참조).

#### <표 11> 최근 3년간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예산 및 운영 실적

(단위: 천원, %)

| 구 분  |         | 예        | 산      |      | 목표대비 성과 |           |       |
|------|---------|----------|--------|------|---------|-----------|-------|
| 一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목표      | 실적        | 달성율   |
| 2017 | 852,612 | 836, 156 | 16,456 | 1.9  | 6회/24만부 | 6회/25.5만부 | 106.3 |
| 2016 | 879,635 | 783,771  | 95,864 | 10.9 | 6회/24만부 | 6회/24만부   | 100   |
| 2015 | 935,899 | 888,533  | 47,366 | 5.1  | 6회/30만부 | 6회/30만부   | 100   |

사업의 사전절차로 로드맵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제안함('16.9.).

<sup>6)</sup> 해당 연구용역은 2017년 8월 3일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됐으며, 연구기간은 4개월(8.3.~11.30.)임.

- 의회사무처는 2017년 3월 자체적으로 의회 소식지 배부처와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후, 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복지시설·병원·도서관·학교 등) 배부처를 늘리고 구독을 희망하는 시민을 추가로 발굴해 제182호(3월호)부터 제184호 (7월호)까지 3회 분을 회당 4만부에서 각 5,000부 늘려 확대 발행했음.
  - 또한 제185호(특집호)는 106명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화보를 촬영해 발행규격(국배판→국8절)과 발행면수(156면→190면)를 변경해 발행했음.
- 이렇듯 사업 계획이 확대 변경되면서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발행업체 낙찰차액(6,191만원)과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사업비 일부를 변경(2,000만원)해 충당했음(<표 7>, <표 12> 참조).

#### <표 12> 2017년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추가 소요 예산

(단위: 천원)

| 2017년 당초예산 | 집행액(17.11.13 현재) | 추가 소요액  | 예산부족분*          |
|------------|------------------|---------|-----------------|
| (A)        | (B)              | (C)     | (D = A - B - C) |
| 832,612    | 771,852          | 142,668 | 81,908          |

<sup>\*</sup>예산부족분은 발행업체 낙찰차액(61,908천원)과 예산 변경(20,000천원)을 통해 충당했음.

○ 그러나 의회 소식지 발행 확대를 위한 추가 사업비는 1차 추가경정예산(7월)을 활용해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11월이 돼서야 예산 변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한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불가피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주의가 필요함.

## 다.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의회방문 청소년, 내·외빈과 국제교류 활동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만화,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 배부하고 있음.

- 2017년도 제9대 후반기 의회안내 홍보만화책은 9,500부 제작됐으며, 홍보 브로슈어 (외국어 버전 포함)는 미제작됨.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16년 평균 6.8%의 불용률을 보이나, 2017년은 기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 재고수량(18.6.18일 현재 재고 : 2,415부)이 충분해 추가 제작하지 않아 53.5%의 불용률이 발생했음(<표 13> 참조).

#### <표 13> 최근 3년간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
| 2017 | 20,000 | 9,296  | 10,704 | 53.5 |
| 2016 | 81,561 | 75,607 | 5,953  | 7.3  |
| 2015 | 20,000 | 18,795 | 1,250  | 6.3  |

-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조사와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안내 홍보책자에 대한 관리 현황 파악조차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오류를 범한바, 향후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홍보책자 관리가 우선 돼야 할 것임.
- 또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 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액에 감액해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라.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

- 의회사무처는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과 시의회 청사 투어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의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 전시시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책자 제작 2000만원, ▶이동식 포토존 시스템 구입 1,800만원 ▶홍보전시시설 추가 설치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편성했음.
  - 이 중 홍보전시시설 추가 설치 2,000만원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것임.

○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돼 본관과 의원회관 각각 1층 로비에 '이동식 포토존'이 아닌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설치됐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출액이 감소하면서 17.9%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표 14> 참조).

#### <표 14→ 2017년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 예산 집행 결과

(단위: 천원, %)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br>(불용률)   | 불용사유  |
|--------|--------|-----------------|---|
| 40,000 | 32,844 | 7,156<br>(17.9) | 사업계획 변경(이동식 포토존 → 독도 실시간<br>중계시스템)에 따른 지출액 감소 |

-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철저한 수요 조사와 사업성과 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당초 추진 계획과 달리(2017년도 시의회사무처 예산 설명서 pp.98-100) 독도 실시간 중계시스템 설치가 11월에 추진됨으로써 의회 예산 편성 취지와 효과가 퇴색됐다고 할 수 있음.

## 마.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해외자매도시 의회 간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56.7%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표 15> 참조).

#### <표 15> 최근 3년간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      | 예산       |         |   | 목표대비 성과                                     |    |    |      |
|------|----------|---------|---|---|----|----|------|
| 구 분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집행진액<br>(불용률)   | 불용사유  | 목표 | 실적 | 달성율  |
| 2017 | 194,790  | 37,338  | 157,452<br>(80.8)   | 해당 도시 정치사정(선거 등)등의 사유로<br>방문이 지연되어 교류실적이 저조 | 5회 | 2회 | 40.0 |
| 2016 | 197, 100 | 126,059 | 에르스로 인해 '16년으로 방한 연기한<br>71,041 자매도시들이 있어 예산을 증액했으나,<br>(36.0) 베이징, 도쿄, 뉴사우스웨일즈 등이 국내<br>사정으로 방한 연기 |   | 9회 | 6회 | 66.7 |
| 2015 | 102,400  | 47,745  | 54,655<br>(53.4)  | 메르스로 인해 도쿄, 하노이, 자카르타 등<br>'16년으로 방한 연기     | 4회 | 1회 | 25.0 |

- 2017년 불용률은 80.8%로 전년대비 44.8%포인트(36.0% → 80.8%)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자매도시 의회 대표단이 자국의 사정으로 인해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했기 때문임.
- 이처럼 연례 반복적인 예산불용을 지양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주요 도시와의 교류확장 등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교류 네트 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자매도시의회의 경우 다음연도의 초청대상 도시정부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자매도시 의회대표단의 초청과 방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대표단 초청의 차질은 서울시의회의 해외 자매도시 방문 기회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사업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바. 국내 의정활동 교류

○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업은 전국 시·도의회 간 상호 교류 활동과 의원 세미나 등을 지원해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의회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는 사업임.

- 2017회계연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134만원 증액(154%)된 4억 1,454만원을 편성했음(<표 16> 참조).
  -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의원이 공무 및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국내여비(전년도 대비 2억 5.440만원 증액된 3억 7.200만원)를 대폭 늘렸기 때문임.

<표 16> 2017년 국내 의정활동 교류 예산

(단위: 천원, %)

| 구 분       | 2016예산액 | 2017예산액 | 증감 (B-A) |             |
|-----------|---------|---------|----------|-------------|
| 丁 正       | (A)     | (B)     | <u> </u> | (B-A)*100/A |
| 계         | 163,200 | 414,540 | 251,340  | 154         |
| 사무관리비     | 15,000  | 15,000  |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0,600  | 27,540  | △3,060   | △10         |
| 의원국내여비    | 117,600 | 372,000 | 254,400  | 216         |

- 그러나 예산 집행 결과 2억 8,960만원을 남겨 69.9%의 불용률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을 증액한 금액(2억 5.134만원)을 넘어서는 수치임.
- 의원국내여비는 의원의 국내공무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의정 지원을 하는 데 그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내 의정활동 교류 예산은 최근 3년간 매년 30%을 웃도는 예산 불용률을 보여 왔음(<표 17> 참조).

#### <표 17> 최근 3년간 국내 의정활동 교류 예산 집행 결과

(단위 : 천원, %)

| 2017    |         | 년도                | 2016년도  |                  | 2015년도  |                  |
|---------|---------|-------------------|---------|------------------|---------|------------------|
| 예산과목    | 예산현액    | 집행잔액<br>(불용률)     | 예산현액    | 집행잔액<br>(불용률)    | 예산현액    | 집행잔액<br>(불용률)    |
| 사무관리비   | 15,000  | 30<br>(0.2)       | 15,000  | 121<br>(0.8)     | 15,000  | 511<br>(3.4)     |
| 시책업무추진비 | 27,540  | 51<br>(0.2)       | 30,600  | 3, 154<br>(10.3) | 30,600  | 501<br>(1.6)     |
| 의원국내여비  | 372,000 | 289,518<br>(77.8) | 117,600 | 42,500<br>(36.1) | 117,600 | 53,248<br>(45.3) |
| 계       | 414,540 | 289,599<br>(69.9) | 163,200 | 45,775<br>(28.1) | 163,200 | 54,259<br>(33.3) |

- 상임위원회별 의원 세미나의 개최 감소 등이 주된 이유이나, 지나친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시도됐어야 했음.
  - 이와 관련해 현재 지방 분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의회 간 활발한 교류 협력과 연대 활동의 자리를 마련한다면,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의 지방의회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예산의 집행률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사.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의회 발전 및 시민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등 시의회 정책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 2017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연구의 질을 높이고 집중 관리하기 위해 1월~2월 상반기 연구과제 제안 접수를 시작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계획했음(<표 18>참조).

<표 18> 2017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일정

| 사업추진절차                                | 추진기간             | 추진세부내용  |
|---------------------------------------|------------------|---|
| 상반기 연구과제 제안서 접수                       | 2017.1.~2017.2.  | 상반기 연구과제 제안접수                                   |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및<br>연구기관 선정(제안서 평가)     | 2017.2.~2017.3.  | 상반기 수행과제 선정 및 연구기관 선정                           |
| 연구용역 계약 및 연구수행                        | 2017.3.~2017.8.  | 상반기 연구과제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한<br>업체 선정 및 계약, 연구과제 수행 |
| 하반기 연구과제 제안서 접수                       | 2017.5.~2017.7.  | 하반기 연구과제 제안접수                                   |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및<br>연구기관 선정<br>(제안서 평가) | 2017.7.~2017.8.  | 하반기 수행과제 선정 및 연구기관 선정                           |
| 연구용역 계약 및 연구수행                        | 2017.8.~2017.12. | 하반기 연구과제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한<br>업체 선정 및 계약, 연구과제 수행 |

- 그러나 관련 조례 개정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당초 계획과 달리 2017년 5월에야 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과제선정(34건)과 입찰공고 및 연구기관 선정(7월), 계약체 결을 거쳐 8월에서야 본격적으로 연구 과제에 착수했음.
- 이처럼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 지연으로 '원스톱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전체적인 차질을 빚었으며, 연구용역 2건7)또한 사고 이월 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사업목적의 취지가 퇴색됐고, 특히 의회 정례회 기간과 맞물려 전문위원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했음.
- 향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일정, 결과물의 시의성 확보와 연구 내용의 품질 향상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sup>7) 「</sup>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지원 방안연구」